

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08. 3. 3 조례 제928호
일부개정 2015. 1. 9 조례 제1421호(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21. 4. 29 조례 제212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,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용인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민의 협력)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2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
3.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4.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지원)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

외한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
3.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6.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21. 4. 29]

제6조 삭제 <2021. 4. 29>

제7조 삭제 <2021. 4. 29>

제8조 삭제 <2021. 4. 29>

제9조(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5. 1. 9>

[제목개정 2021. 4. 29]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중복지원금지 적용)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부칙 <2015. 1. 9 조례 제1421호,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「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5조제2항”을 “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2항”으로 한다. 제8조 중 “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3조제1항”을 “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”으로 한다. 제9조 중 “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⑫ 부터 ⑭ 까지 생략

부칙 <2021. 4. 29 조례 제212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